

의안번호	2214250
의 퇴 인	오세희 의원
회 답 일	2026. 1. 8.
추계번호	25A6193

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른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,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의 설치,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의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억 2,100만원, 2031년 6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6,500만원(연평균 7,3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(안 제6조)	11	11	11	11	11	55	11
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 (안 제7조)	50	50	50	50	50	250	50
합 계	121	61	61	61	61	365	73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6조(스마트제조산업)	○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업위원회)	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 제조산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	
3	안 제7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마트제조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스마트제조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함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8조(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5	안 제9조(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등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스마트제조기술의 기술 수준 향상 및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－ 2.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,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시설·장비 등의 지원 － 3. 스마트제조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－ 4. 스마트제조데이터의 보안 및 활용 지원 － 5. 스마트제조기술 관련 산학협력 기반의 연구·조사 지원 － 6. 그 밖에 스마트제조기술 개발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제조기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(제2항)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제조기술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6	안 제10조(핵심 스마트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제조기술의 지정 및 지원)	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한 스마트제조기술을 지정대상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함(제1항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,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,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관련 기업,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
7	안 제11조(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·소프트웨어 등을 개발·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(이하 “전문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1. 연구개발, 실증, 사업화 지원 2.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금융, 세제, 투자유치 지원 3.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 지원 4. 해외 전시회 참가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	재량규정
8	안 제12조(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기술 도입 지원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설비 및 관련 기기 설치 2. 스마트제조데이터 확보 및 활용 체계 구축 3. 스마트제조기술의 적용 및 고도화 4. 스마트제조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 인력 교육 5. 전담기관 및 전문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	재량규정
9	안 제13조(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구축 등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및 성능평가 등을 위하여 시험·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(이하 “실증기반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0	안 제14조(스마트제조를 통한 지속 가능성 증진)	정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이 환경·사회·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 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(제1항) - 1.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지원 - 2. 스마트제조 관련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근로 환경 개선 지원 - 3. 제조공정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 지원 - 4. 지속 가능성에 관한 목표를 달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등 우대 지원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평가 등을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11	안 제15조(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- 1.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모델 연구개발 - 2. 스마트제조데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 및 수요 조사 - 3.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 관련 민관 공동 협의체 운영	재량규정
12	안 제16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- 2. 스마트제조데이터 생산·수집, 가공·분석 및 공유·유통 등의 촉진 지원 - 3. 스마트제조데이터 표준을 준수한 제품·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확보 지원 - 4. 그 밖에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3	안 제17조(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술의 개발 - 2.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진단 및 자문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3. 그 밖에 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
14	안 제18조(스마트제조데이터 권리관계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)	○ 스마트제조데이터 관련 분쟁의 조정·중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를 둠(제2항)	의무규정
15	안 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- 1.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의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- 2.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·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- 3.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직무 표준 및 자격제도 마련 - 4. 스마트제조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및 능력 개발 지원 - 5. 스마트제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- 6. 그 밖에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인증, 전문인력의 교육·훈련이나 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16	안 제20조(우수 기업 및 기관 선정·포상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7	안 제21조(국제협력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1.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기술·정보 및 인력 교류 - 2. 스마트제조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 표준화 - 3.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- 4.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- 5.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보안 강화 등과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관련된 국제 협력체계의 구축 － 6.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2항)	
18	안 제22조(금융 및 세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제조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자금의 지원, 특례보증의 제공, 조세 감면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)	○	—
2	안 제6조(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)	○	—
3	안 제7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)	○	—
4	안 제8조(스마트제조산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원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－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,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, 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실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5	안 제9조(스마트제조기술 개발 등 지원)	X	
6	안 제10조(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지원)	X	
7	안 제11조(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X	
8	안 제12조(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기술 도입 지원)	X	
9	안 제13조(스마트제조기술 실증 기반 구축 등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0	안 제14조(스마트제조를 통한 지속 가능성 증진)	X	
11	안 제15조(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)	X	
12	안 제16조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)	X	
13	안 제17조(스마트제조데이터 보안 지원)	X	
14	안 제18조(스마트제조데이터 권리관계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)	X	
15	안 제19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	X	
16	안 제20조(우수 기업 및 기관 선정·포상)	X	
17	안 제21조(국제협력)	X	
18	안 제22조(금융 및 세제 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

○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현행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중소벤처기업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4 결산	2025 예산	2026 예산
안 제11조 (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공급기업 역량진단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 업부)	300	1,000	800
안 제15조 (스마트제조데이터	ICT융합스마트공장보 급확산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	1,493	3,000	8,140

제정안	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4 결산	2025 예산	2026 예산
의 표준화)	(제조데이터생태계구 축)	업부)			
안 제16조 (스마트제조데이터 활용 촉진)	데이터인프라구축(정 보화)	일반회계 (중소벤처기 업부)	6,900	5,836	5,922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제정안의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2027년에 6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제조데이터 활용 정책 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7,999만원), “미래 스마트공장 방향제시 및 스마트 제조산업발전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6년, 8,573만원), “스마트공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”(중소벤처기업부, 2020년, 1,952만원) 등이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	60	—	—	—	—	60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(안 제6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관련 비용은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금액으로 함

○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를 정원의 과반인 11명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— 안 제6조제3항에 따르면,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
— 안 제6조제2항에 따르면,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정책·사업의 추진 방향 및 주요 과제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제조기술의 연구개발, 보급·확산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□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5,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5]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 (안 제6조)	11	11	11	11	11	55	1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(안 제7조)

□ 비용추계 대상은 “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 작성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동 통계 작성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제정안의 통계 작성은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할 때 매년 5,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
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스마트 제조산업 생태계 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19년, 8,500만원), “2025년도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추진 및 분석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3,661만원), “스마트제조혁신 통계정보 조사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”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2025년, 2,417만원) 등이 있음

□ 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억 5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[표 4] 스마트제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(안 제7조)	50	50	50	50	50	250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□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